

2023년 제1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

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「2023년 제1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」임

I | 추진목적 및 근거

추진목적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도내 일자리 확대와 사업 성장기반 조성
- 도내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으로 지속적·안정적 수익 구조 기반 마련 및 기업 경영역량 강화

추진근거
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)
- 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)
- 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재정지원)

II | 공모개요

공모개요

- 공모기간 : '23 2. 1.(수) ~ 2. 15.(수) [15일간]
- 공모분야 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일자리창출사업(일반인력)
 - (예비사회적기업 지정) 신규지정
 - (일자리창출사업)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
- 사업예산 : 6,530백만원*(균특 4,897, 도비 490, 시군비 1,143)

* 지정은 비예산 사업, 일자리창출(전문인력)은 별도 공모로 예산 미포함

※ 2022년 예비지정 및 일자리창출 공모 선정 현황

구 분	계	1차(4월)	2차(8~9월)
예비사회적기업 지정	28개소	16개소	12개소
일자리창출	103개 기업 311명	54개 기업 130명	49개 기업 181명

□ 주요 내용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- 지정기간 : 3년
- 지정혜택 : 일자리창출·전문인력·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사회적기업 육성 교육, 홍보, 판로지원 등

○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- 지원내용 :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※ 2023년 기준금액 : 2,010,580원
- 지원비율

구 분	예비사회적기업		사회적기업		
	1년차	2년차	1년차	2년차	3년차
일반 근로자	50%	50%	40%	40%	40%
취약계층	70%	70%	70%	70%	70%

※ 지역자율사업 20% 추가 지원(24개월 이상 계속 고용, 취약계층 50% 이상 고용 시 각 10%)

- 지원인원 : 최대 50명
- 지원기간 : 1년(매년 재심사) ※ 최대지원기간* 5년(예비 2년, 인증 3년)

III 상세일정

구 분	세 부 내 용	추진 주체
계획수립	· 계획수립(1월 말) 및 공고(2.1.), 시군 통보	도
공모 · 검토	· 신청서 접수 (2.1.~2.15. 15일간) ※ 상담 및 협의 : 권역별 지원기관(지정 및 사업 설명회 2.7.)	시군
	· 서류검토 및 서류보완(~2. 22.)	시군
	· 사회적가치지표평가(SVI) 업무추진(2.23.~3.10.) ※ 대상 : 일자리창출 신청기업, SVI 현장실사 : 2.23.~3.2.	권역별 지원기관
	· 현장실사(3.10.~3.23.) 및 검토보고서 제출(~3.31.) ※ 협조 : 고용지청, 권역별 지원기관 협조(도 지원)	시군
심 사	·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(4.17.~4.21. 예정)	도
결과공개	·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통보(4월 말)	도
후속조치	·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(4월 말) ·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(4월말~) · (공통) 관리 및 지원(도·시군·고용부·권역별 지원기관)	도→시군→기업 시군 ↔ 참여기업 관계기관

IV | 향후계획

- 모집 공고(도, 시.군 홈페이지 및 공고 게시) : '23. 2. 1.(수) ~ 2. 15.(수)
 - 지정 및 사업 설명회 개최(도청 대회의실) : '23. 2. 7.(화)
 - 현장 실사(도, 시.군, 고용지청, 지원기관) : '23. 3. 10.(금) ~ 3. 23.(목)
 - 경남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(예정) : '23. 4. 17.(월) ~ 4. 21.(금)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, 심사계획 별도 수립

- 붙임 1. 2023년 제1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(안) 1부
2. 2023년 제1차 경상남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(안) 1부